문서번호	자치행정과-13106
결재일자	2015.7.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민방위담당	자한정과장	행정국장	
김창환	장성태	박성도	07/13 손정수	
협 조				

시회복무요원 보상 단체보험 기입 계획

2015. 7.

행정국자치행정과

사회복무요원 보상 단체보험 가입 계획

I 개 요

- □ 관련근거
 - 병역법 제75조(보상 및 치료). 제75조의2(재해 등에 대한 보상)
 - 병역법시행령 제153조의3(사망보상금). 제154조의4(장애보상금)
 - 군인연금법 제31조(사망보험금), 제32조(장애보상금)
 -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(병무청 훈련 제1158) 제60조~제64조 ※ 공무상치료비(의료비) : 보험계약조건에 따라 지급
- □ 가입기간 : 2015.7.17. 16:00 ~ 2016.7.17. 16:00(1년)
- □ 가입대상 : 성북구청(사회복지시설 포함) 소속 전 사회복무요원
 - 대상자 : 총192명(2015.7.13. 복무포털 복무자명부 현황)
 - 2015.7.17. 이전 소집해제예정자 및 복무중단자 포함 (소집해제일 연기사유 및 고발자,분할복무신청자 재복무 발생가능)
 - 근무지별 현황

근무지별	인원(명)	비고	
성북구청	113	구,주민센터, 보건소, 구의회 포함	
사회복지지설	79		

- □ 가입금액 : 2,768천원(2015 예산액 : 2,805천원)
 - 산출내역 : 견적의뢰(담보 내용 및 보장금액 동일), 1인당 14,417원
 - 보험사('15.06.30) : <u>LIG-2,768.000원</u>, 동부화재-2,776.200원
- □ 예산과목 : 국가비상대비역량제고, 민방위통합관리, 공익근무요원관리, 일반보상금, 공익근무요원보상금

Ⅲ 재해보상금 지급기준

□ 근거 : 2015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안내(서울지방병무청)

구분		지급액(원)	비고
사망보상금		113,867,676	
장애보상금	1급	15,262,494	
	2급	10,174,996	
	3급	7,631,247	
	4급	5,087,498	
공무상의료비		100,000,000	

[※] 산출기초는 병무청 지급기준에 의거 보험산정

\blacksquare

보험회사 선정

□ 보험사 기준

-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
- 보험사의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 상품 개발 및 개별법에 의한 보험 허가 여부. 지급여력 등 자격요건 갖춘 보험회사
 - ※ 관련근거 : 보험업법
 - 제3조(보험계약의 체결) :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제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.
 - 제4조(보험업의 허가) 제1항 :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□ 보험회사 선정 : ㈜LIG

○ 방법 : 수의계약

- 근 거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

- 사 유 : 금액이 소액이며,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 전문 회사임.

- 보험적용 : 복무 중 공상,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사회복무요원

Ⅳ 보상청구

- □ 비용청구 : 해당 사회복무요원 또는 근무지 담당자
- □ 공상 여부 확인 : 구 자체 공상심의위원회 개최
- □ 보험사에 대상자 통보
 - 관련 서류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 공문 발송
 - 보험금 수령시 까지 피보험자를 대행하여 업무 처리

Ⅴ 행정사항

- 단체보험 계약 : 2015. 7. 15
- 단체보험료 입금(가상계좌 입금): 2015. 7. 16

붙 임 : 단체보장보험 제안서 1부.